

「청탁금지법」 주요 개정사항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개정·시행('22.6.8.)에 따라 **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,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도입**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

□ 개정 목적

-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도모

□ 주요 개정내용

구분		개정내용
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(법 제5조제1항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견습생 등 모집·선발(제3호)■ 장학생 선발(제5호)■ 논문심사·학위수여(제10호)■ 인정(認定) 업무(제12호)■ 형의 집행, 수용자의 지도·처우·계호(제14호)
신고자 보호·보상 강화	비실명 대리신고 (법 제13조의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
	구조금 지급 (법 제15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·정신적 치료비, 쟁송비용, 이사비 등을 지급
	이행강제금 (법 제15조의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* 단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

□ 기관별 조치사항

- 소속·산하기관에 법 개정내용 전파 및 전 직원 교육 실시
 - 특히,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 직무의 담당자(교도관 등)에 대한 충분한 교육 필요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부정청탁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채용·승진·전보</u>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, 포상, 우수기관 선정 또는 <u>우수자</u>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</p> <p>6. ~ 9. (생략)</p> <p>10. 각급 학교의 입학·성적·<u>수행평가</u>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·조작하도록 하는 행위</p> <p>11. (생략)</p> <p>12.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<u>평</u></p>	<p>제5조(부정청탁의 금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모집·선발·채용</u>-----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<u>우</u> <u>수자·장학생</u>----- -----</p> <p>6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<u>수</u> <u>행평가·논문심사·학위수여</u>----- -----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----- <u>평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가·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<u>평가 또는 판정</u>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</p>	<p>가·판정·인정----- -----<u>평가, 판정 또는 인정</u>하 게----- -</p>
<p>13. (생략)</p>	<p>13. (현행과 같음)</p>
<p>14. 사건의 수사·재판·심판·결정·조정·중재·<u>화해</u>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</p>	<p>14. ----- -----<u>화해, 형의 집행, 수용자의 지도·처우·계호</u>-----</p>
<p>15. (생략)</p>	<p>15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13조의2(비실명 대리신고)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,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5조(신고자등의 보호·보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, 제14조제3항부터 <u>제6항까지</u>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공익신고자등”은 “신고자등”으로, “공익신고등”은 “<u>신고등</u>”으로 본다.</p> <p>⑤·⑥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제15조(신고자등의 보호·보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제6항까지,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, 제20조의2, 제21조 및 제22조</u>----- ----- “<u>신고등</u>”으로, “공익신고자”는 “<u>신고자</u>”로, “공익침해행위”는 “<u>이 법의 위반 행위</u>”로 ----- -----.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·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에 관한 감사·수사 또는 조사 등에 조력한 자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·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,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신고자”는 “제13조제1항에 따라</p>	<p>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육체적·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. 전직·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.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.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.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(인가·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·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) <p>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·보상금·구조금의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신고를 한 자”로, “신고”는 “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”로 본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23조(과태료 부과) ① (생략)</p> <p>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(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)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(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「형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</p>	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15조의2(이행강제금)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,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23조(과태료 부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(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)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(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. 다만, 「형법」 등 다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아니하며,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.</u>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	<p><u>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.</u></p> <p>2.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